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1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김기덕,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박수빈,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아이수루, 왕정순,
, 유정희, 윤영희, 이민옥,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교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에 추가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여, 서울형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가하여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함(안 제1조)
-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범위에 ‘대학’을 명시하여 참여 주체를 확대함(안 제6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외교법」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민간”을 “민간단체·법인, 대학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u> ----- --.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치구와 <u>민간</u> 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 5. (생략)	제6조(사업) ----- ----- -----. 1. (현행과 같음) 2. ----- <u>민간단체·법인, 대학 등</u> ----- 3. ~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6조(사업)제2호의 민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¹⁾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문화본부 2025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 5,111,100천원천원(민간국제 문화교류 사업 포함)
○ 서울시 관련부서 각종자료 확인결과 기존에도 해당 사업에 대학(민간에 포함)이 참여할 수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
※ 참고로 입법취지 문의결과 해당 개정안은 대학의 사업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입법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사업 추진 등은 추계 고려사항에서 제외함